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방안

2006. 2. 17



재정경제부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Republic of Korea



- 설명 순서 -

I. 제정 배경

- ☐ 현황
- ☐ 문제점
- ☐ 기본방향

II. 주요 내용

- ☐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 ☐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 ☐ 업무범위의 확대
- ☐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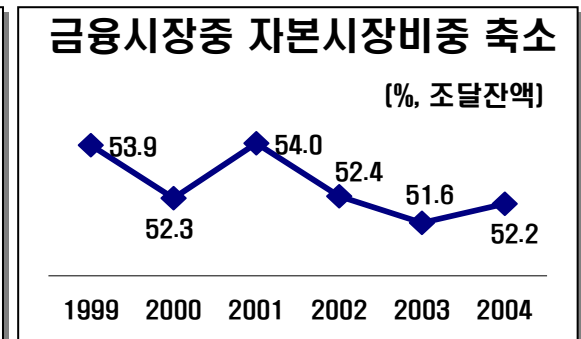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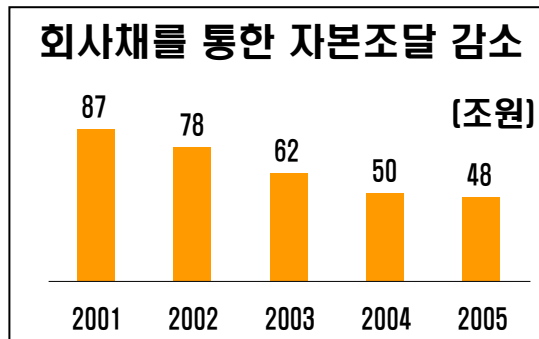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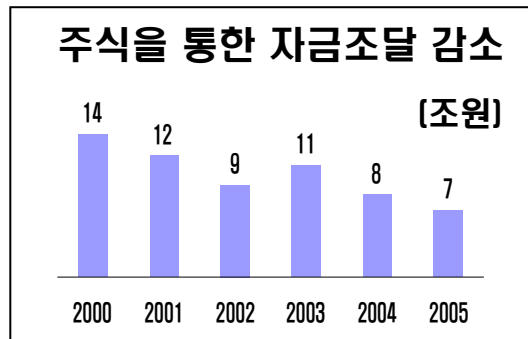
III. 기타 사항

IV.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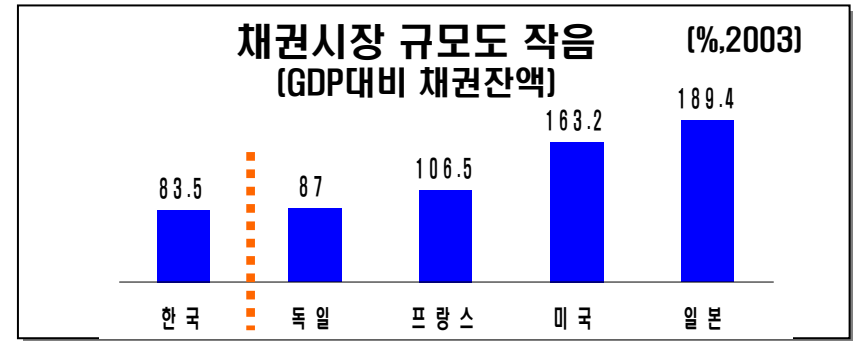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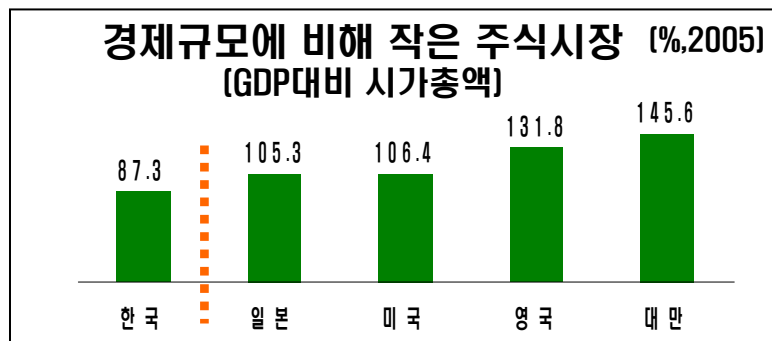
자본시장과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의 발전이 미흡한 상황

□ 자본시장의 현황

○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지속적으로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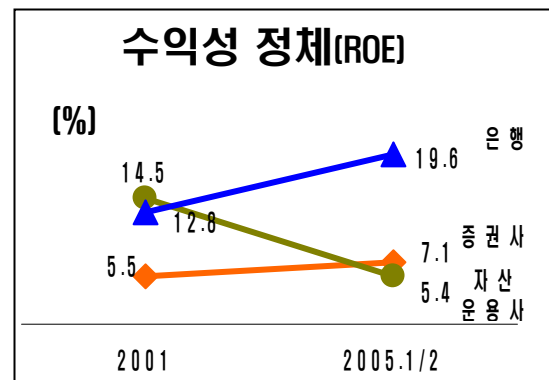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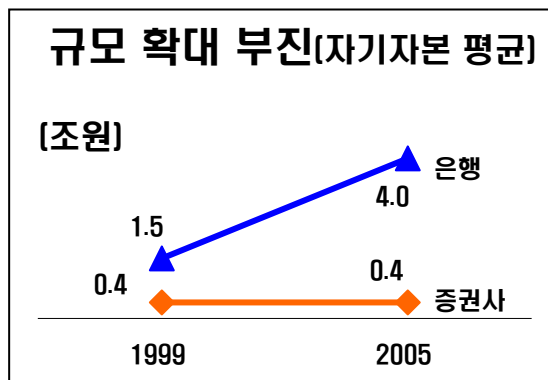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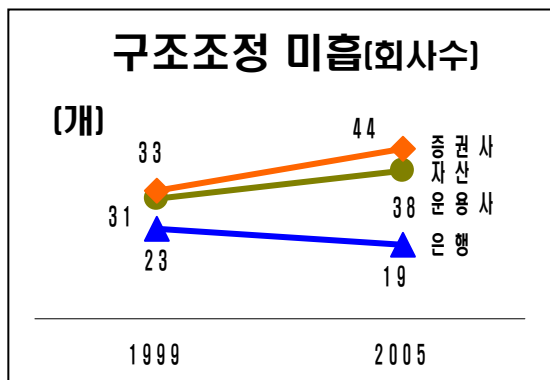


○ 자본시장이 실물경제 규모에 맞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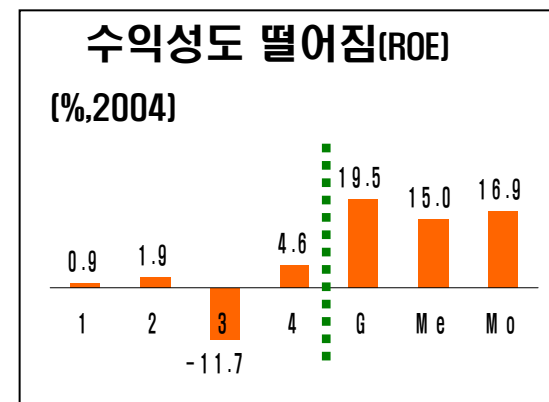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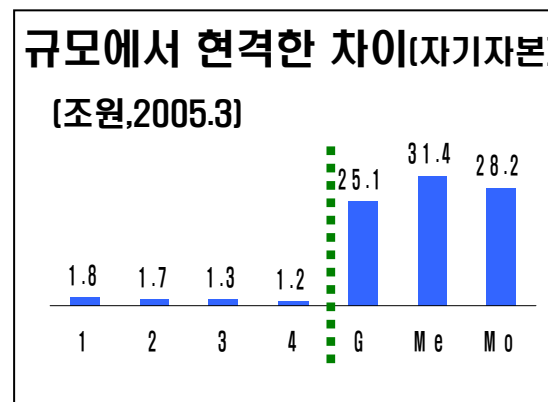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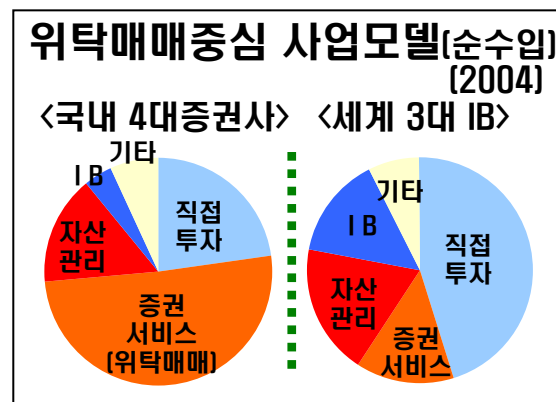


□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 현황

○ 은행에 비해 구조조정이 미흡하고, 대형화도 부진하며, 수익성도 낮음



○ 세계3대 투자은행과 비교할 때 양적 · 질적으로 경쟁력이 크게 부족



* 1, 2, 3, 4 는 자기자본 규모 국내 4대 증권사, G(Goldman Sachs), Me(Merrill Lynch), Mo(Morgan Stanley)

현행 자본시장 관련법률은 자본시장과 관련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되고 있음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적용되는 규제도 상이



경제적 성질이 동일한 금융행위에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어 규제차익과 투자자보호 공백이 발생

증권과 파생상품의 종류를 법률에 제한적으로 열거



다양하고 창의적인 금융투자상품을 개발,판매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

증권업,자산운용업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업간 겸영을 엄격히 제한



선진투자은행에 비해 시너지효과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한계

선진화된 체계적인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



위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빅뱅(Big Bang)을 유도 - 규제개혁과 투자자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각각 재분류
* 금융기능 = 업무 + 상품 + 투자자
- 취급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은 동일하게 규율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률의 규율대상으로 포괄
*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취급가능상품과 투자자 보호 규율 대상을 대폭 확대

자본시장 관련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

업무범위의 확대

- 모든 금융투자업·상호간 겸영 허용
* 매매업, 중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자산보관관리업
- 모든 부수업무의 영위 허용
- 판매권유자 제도의 도입
- 금융투자업 관련 모든 외국환업무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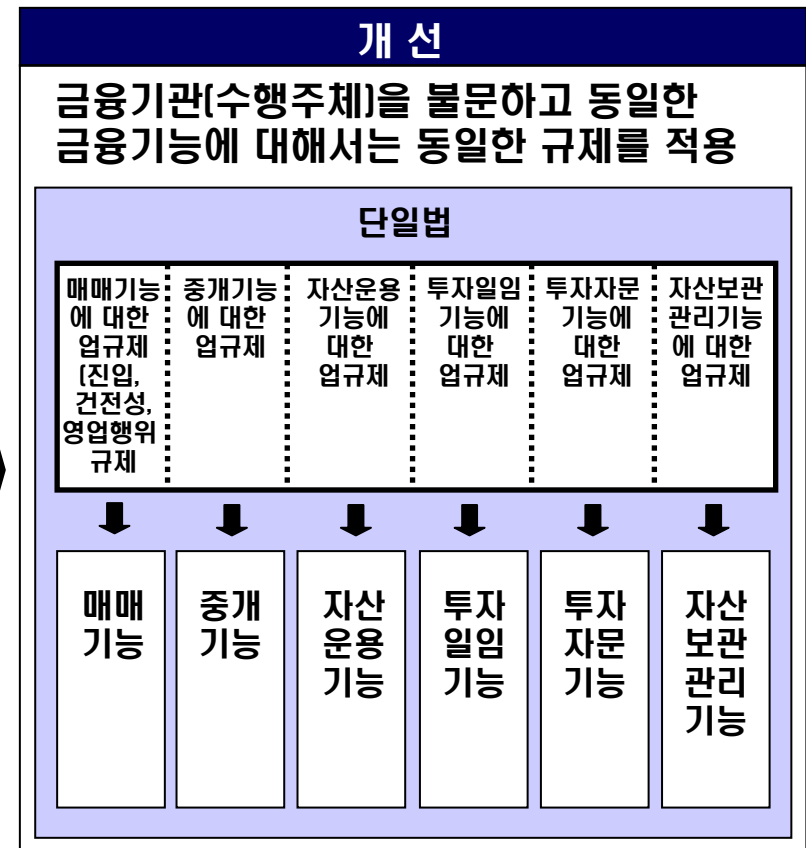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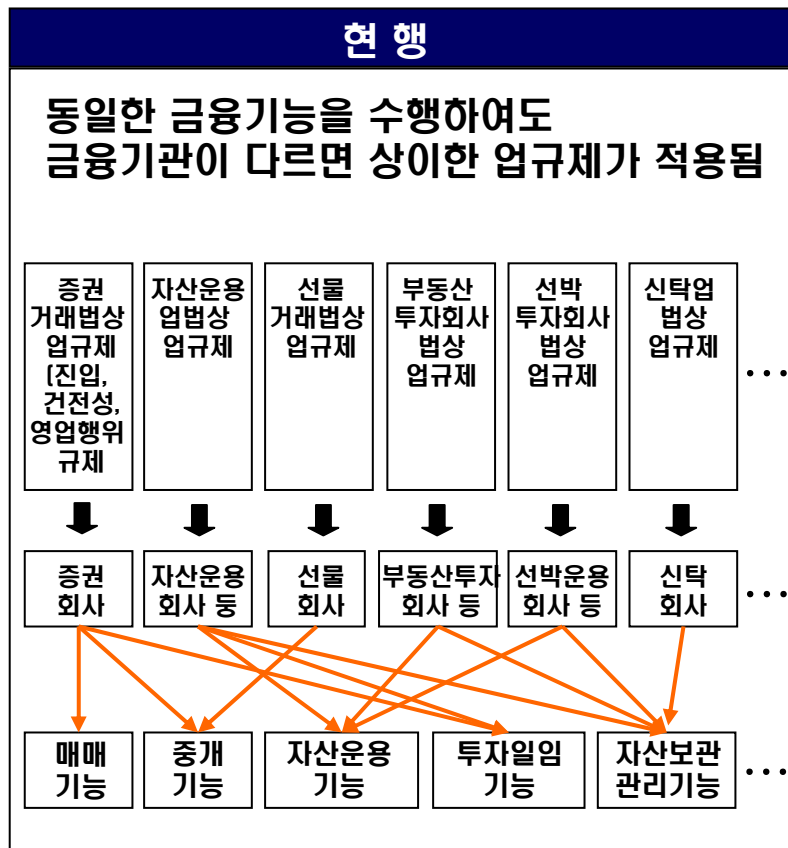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 선진국수준의 투자자보호장치 제도화
* 설명의무, 적합성원칙의 도입 등
- 이해상충 방지체제 마련
- 발행공시의 적용범위 확대
* 간접투자증권, 수익증권 등

II. 주요내용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1. 기본방향

- **현행 기관별 규율체제(Institutional Regulation)를
기능별 규율체제(Functional Regulation)로 전환**



2. 금융기능의 개념 정의

(1) 기본 방향

- 기능별 규율체제의 기본이 되는 ‘금융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

금융기능 = 투자자 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의 금융투자업

- 투자자,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을 각각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



- 위 세가지 요소를 조합하여 가능한 모든 금융기능을 정의

➡ 예: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중개업’

II. 주요내용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2) 금융투자업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투자자 + 금융투자상품 + **금융투자업**

□ 매매, 중개,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자산관리보관업의 6개로 구분

현행 : 각 법률별로 각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업을 열거

법	선물 거래법	증권 거래법	종금 법	신탁 법	자산운용업법				기업구조 조정 투자회사법		부동산 투자 회사법		선박 투자 회사법		산업발전법 벤처특별법 중기창업지원법 등
금융 회사	선물 회사	증권 회사	종금 회사	신탁 회사	자산 운용사	자문 사	일임 사	보관 회사, 수탁 회사	자산 관리 회사	자산 보관 회사	자산 관리 기관	자산 보관 기관	선박 운용 회사	자산 보관 회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창업투자회사 등
금융업		매매 인수 매출	매매 인수 할인		간투 증권 판매										
	선물 거래	위탁매매 중개,대리	중개												
					자산 운용				자산 운용	자산 운용	자산 운용	자산 운용			업무집행조합원 업무 등
						투자 자문									
							투자 일임								
				신탁업				보관업 수탁업	자산 보관	자산 보관	자산 보관	자산 보관			

개선 : 경제적 실질에
따라 6개로 단순화

법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금융 회사	금융투자회사
금융업	매매업
	중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자산보관관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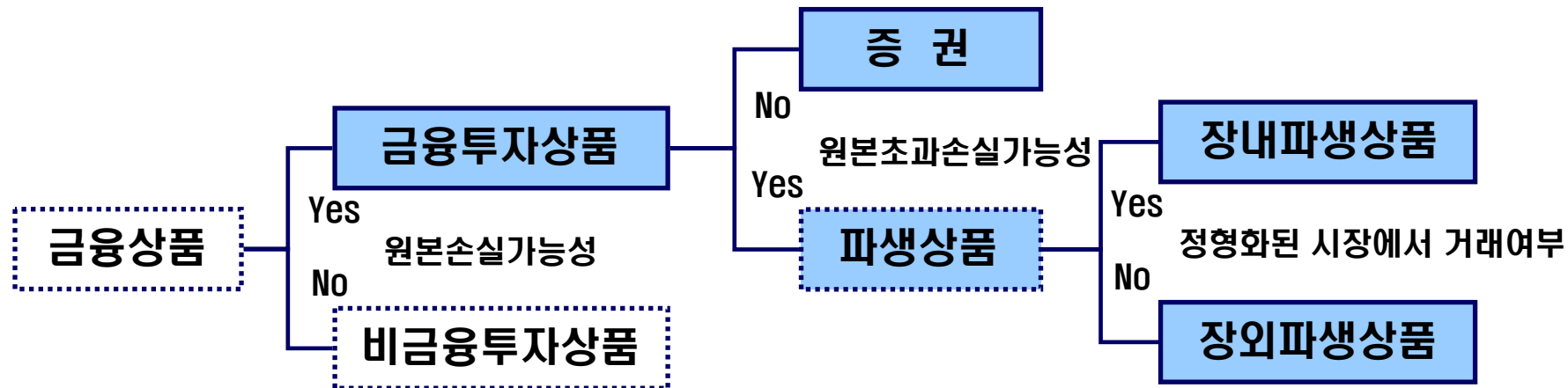
(3) 금융투자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투자자 + **금융투자상품** + 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상품은 기본적으로 원본손실의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예금등 비금융투자상품과 구분

□ 금융투자상품은 그 위험의 크기에 따라 증권(일반금융상품)과
파생상품(위험금융상품)으로 구분

○ 파생상품은 거래형태에 따라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



(4) 투자자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투자자 + 금융투자상품 + 금융투자업

- 전문지식의 정도, 투자자금의 규모 등 투자위험에 대한 감수능력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

전문투자자

- 금융기관, 대규모법인(종업원수, 자산, 자기자본 등 기준), 정부, 국제기구 등
- 개인(거래경험, 금융자산 규모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투자자

- 그 외의 개인과 법인

※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에 비해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작으므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등을 완화하여 적용

3. 업규제(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의 개편

(1) 진입규제의 개편

- ‘금융기능’별 인가체제 도입
 - 금융기능(투자자+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 별로 진입요건 마련
 ➡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진입요건 적용
 - 원하는 금융기능을 추가하는 방식(add-on)으로 업무영역을 확대
- 각 금융기능별 위험의 크기에 따라 인가제·등록제 적용
 - 고객과 직접 채권·채무관계를 가지거나(매매업),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금융기능(자산운용업, 중개업, 자산보관관리업) ➡ 인가제
 -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지 않는 금융기능(투자일임, 자문업) ➡ 등록제
- 진입요건 중 주요한 요건은 진입 이후에도 계속 충족해야 하는 유지요건으로 규정

□ 금융기능의 특성에 따라 진입요건*을 차등화

• 자기자본, 전문인력·물적설비, 주요출자자, 사업계획의 타당성, 임원의 자격 등

○ 자기자본 요건은 각 금융기능별 위험에 따라 차등화

금융투자업 : 매매업 > 자산운용·중개·자산보관관리업 > 투자자문·일임업

금융투자상품 : 장외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 증권

투 자 자 :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 예: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 매매업의 요건이 가장 강하고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증권 투자자문업의 요건이 가장 약함

- 전반적인 자기자본 수준은 현재보다 낮추어 진입장벽을 완화하되,
add-on방식에 입각하여 일부 금융투자업만을 영위하는 회사에 비해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투자은행은 높은 자기자본요건을 설정

○ 진입요건중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은 질적 심사(Fit & Proper Test)를
요하므로 인가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등록제에는 적용하지 않음

<참고1> 현행 금융법상 금융투자회사의 진입규제

	증권회사 (증권거래법)	선물회사 (선물거래법)	자산운용회사	투자일임 업자	투자자문 업자	자산관리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신탁회사 (신탁법)	종합금융회사 (종금법)	자기관리부동 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선박운용회사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산업발전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규제방식	<허가제>	<허가제>	<허가제>	<등록제>	<등록제>	<등록제>	<인가제>	<인가제>	<인가제>	<인가제>	<허가제>	<등록제>	<등록제>
인가·등록 권자	금융감독 위원회	금융감독 위원회	금융감독 위원회	금융감독 위원회	금융감독 위원회	금융감독 위원회	금융감독 위원회	금융감독 위원회	건설교통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기업청장	산업자원부 장관
진입요건	- 주식회사요건 - 최저자본금 -20억원~ 500억원 - 인적·물적설비 -증권전문인력 및 전산요원 -전산시스템 및 사무공간 구비 - 사업계획의 타당·건전성 -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건 전한 재무상 태 및 사회적 신용 - 임원의 자격	- 법인요건 - 자본금 30억 원 이상 - 인적·물적설비 -인적·물적설비 3인 이상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및 보안설비 구비 - 사업계획의 타당·건전성 -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건 전한 재무상 태 및 사회적 신용 - 임원의 자격	- 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 요건 - 자본금 100억 원 이상 - 인적·물적설비 -운용전문인력 5인 및 전산요원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보안설비 구비 - 사업계획의 타당·건전성 -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건 전한 재무상 태 및 사회적 신용 - 임원의 자격	- 주식회사 요건 - 납입자본 금 30억원 이상 - 투자자문 전문인력 4인 이상 - 사업계획의 타당·건전성 - 주요출자 자 요건	- 주식회사 요건 - 납입자본 금 5억원 이상 - 투자자문 전문인력 2인 이상 - 사업계획의 타당·건전성 - 주요출자 자 요건	- 주식회사요건 - 자기자본금 20억원 이상 - 운용전문인력 4인 이상 - 임원의 자격 - 재무건전성 (직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 를 초과)	- 회사 요건 - 자본금 -100억원~ 250억원 - 인적·물적설비 -운용전문인력 7인 이상 -전산설비구비 - 사업계획의 타당·건전성 -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건 전한 재무상 태 및 사회적 신용 - 임원의 자격 - 신탁부분과 고유부분과의 구분관리, 신탁상품간 구분관리적정	- 주식회사요건 - 자본금 300억 원 이상 - 인적·물적설비 -전문인력 확보 -전산설비구비 - 사업계획의 타당·건전성 -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건 전한 재무상 태 및 사회적 신용 - 임원의 자격	- 주식회사요건 - 자본금 250억 원 이상 - 자산운용전문 인력 5인 이상 - 사업계획의 타당·건전성 - 발기인의 주 식인수능력, 사회적 신용 및 주금납입 계획의 적정성 - 임원의 자격	- 주식회사요건 - 자본금 70억 원 이상 - 인적·물적설비 -자산운용전문 인력 5인 이상 -전산설비, 점포 내부시설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주주구성과 주식인수자금 의 적정성 - 임원의 자격 ·경영진의 전 문성 및 경영 능력 - 고유자산과 위탁자산과의 구분관리계획 의 적정성	- 주식회사요건 - 납입자본금 70억원 이상 - 선박운용전문 인력 및 금융 전문인력 6인 이상 - 사업계획의 타당·건전성 - 주요주주의 출자능력과 재무건전성 - 임원의 자격	- 주식회사요건 - 납입자본금 100억원 이상 - 인적·물적설비 -상근전문인력 2인 이상 -투자상담용 전 용사무실 구비 - 사업계획의 타당·건전성 - 임원의 자격	- 주식회사요건 -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 인적·물적설비 -기업구조조정 전문인력 3인 이상 -투자상담용 전 용사무실 구비 - 사업계획의 타당·건전성 - 임원의 자격

※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상의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는 업규제(자산운용업자 규제)를 두지 않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따르도록 함(vehicle만 규정)

<참고 2> 인가·등록단위의 선택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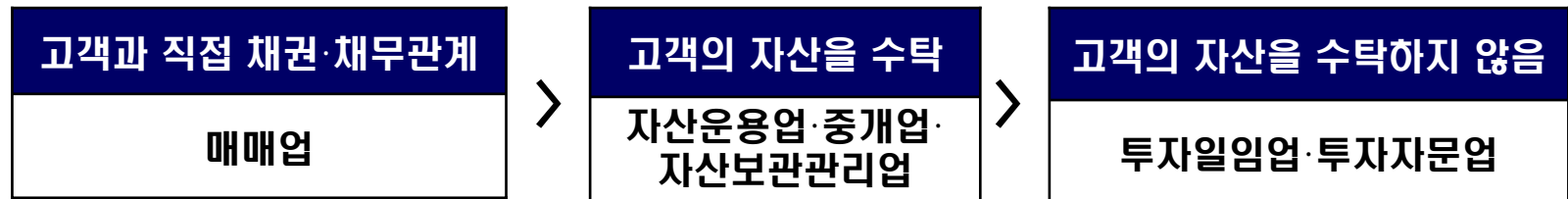
인가·등록신청서

1. 인가·등록 신청 대상

금융업	취급대상 금융상품	고객인 투자자
☐ 매매업	☐ 증권	☒ 일반투자자
☒ 인수업	☐ 채권	☐ 전문투자자
	☒ 주식	
	☐ 간접투자증권	
	☐ 장내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 중개업	☐ 증권	☒ 일반투자자
	☒ 채권	☒ 전문투자자
	☐ 주식	
	☐ 간접투자증권	
	☒ 장내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 자산운용업	☒ 재산적 가치있는 모든 대상	☒ 일반투자자
	☐ (단종) 부동산	☒ 전문투자자
	☐ (단종) 선박	
	☐ (단종) 창업자	
	☐ (단종) 부실기업	
	☐ (단종) 신기술사업자	
	☐ (단종) 사회기반시설	
☒ 투자일임업	☒ 증권	☒ 일반투자자
	☒ 채권	☐ 전문투자자
	☒ 주식	
	☒ 간접투자증권	
	☒ 장내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2) 건전성규제의 개편

- ☐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
- ☐ 다음과 같은 건전성규제 장치는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적용
 - 자기자본규제비율(보유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자기자본 보유)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 재무 및 경영상황 공시 등
- *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적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고유계정의 자산운용규제는 폐지
- ☐ 금융투자회사별 고객의 위험정도에 따라 자기자본규제비율을 차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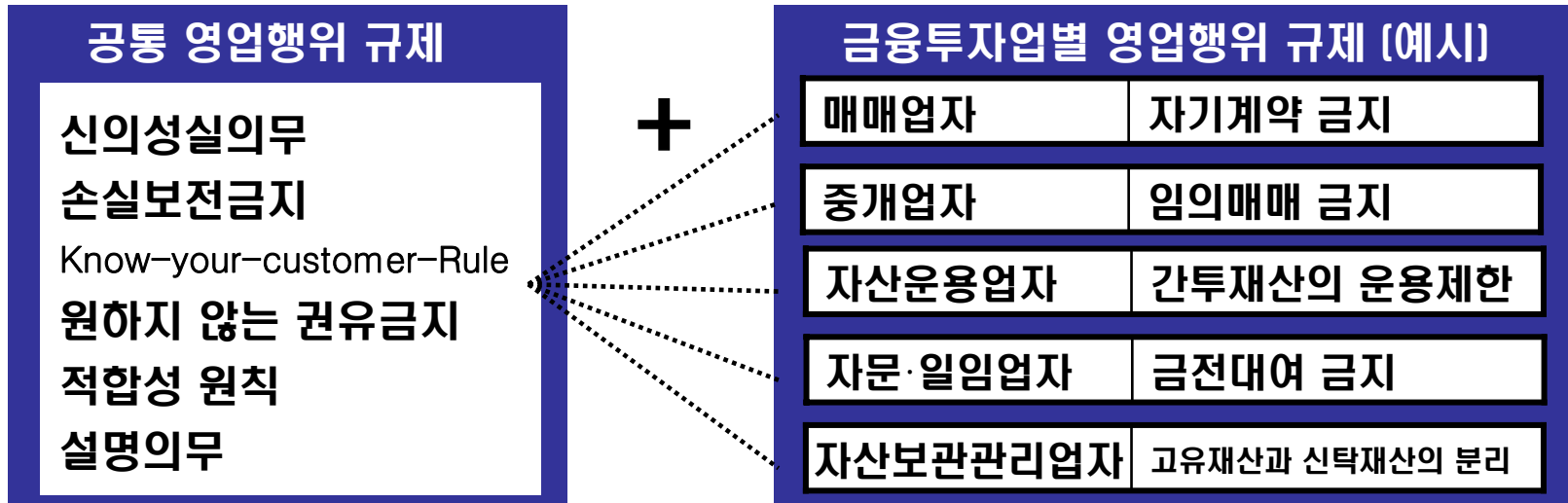


<참고3> 현행 금융법상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규제

	증권회사 (증권거래법)	선물회사 (선물거래법)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자산관리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신탁회사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 (종금법)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법)	선박운용회사 (선박투자회사법)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 원법)	기업구조조정전문 회사 (산업발전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건전성 감독기관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건설교통부 /금감위	해양수산부 /금감위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자기자본 규제비율	-영업용 순자본 비율(100%이 상) [법54의2, 영 37의2, 규정 2-11]	-영업용 순자본 비율(100%이 상) [법39의2, 영10의3, 규정14]	-위험대비 자기 자본비율 [150% 미만시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산법 10, 규 정31~33]				-경영지도비율(위 험가중자산에 대 한 자기자본비 율:8%이상, 원화 유동성비율 100%이상) ※ 부동산신탁회사 만 적용 [법24의3, 영 15의3, 규정27 의2]	-경영지도비율(위 험가중자산에 대 한 자기자본비 율:8%이상, 원 화유동성비율 100%이상) [법21의2, 규정 25]				
최저순자 산액등				-최저순자산 액[2억원 이 상] [법145, 영 134]	-최저순자산액[20 억원 이상] [법145, 영134]	-직전사업년 도 대차대조 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 [법55, 영20]				-최저순자산액(허 가후 1년이 경과 하는 날부터는 50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에서 최저순자산 액을 유지[법34 의2, 법44])	-창투회사(자본잠 식률:50%이상인 경우 경영개선조치 대상) [법26의3, 영24 의2]	
자산운용 규제 (고유계정)			-고유재산 운용 제한[법16] ○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외 화자산 취득, 투자증권 소유, 파생상품거래 등 원칙적금지				-고유자금 운용대 상 제한[법15] ○ 공사채, 주식매입 ○ 유가증권담보대출 ○ 동산담보대출 ○ 부동산 매입등	-유가증권투자한 도[법17] 부동산취득제한 [법19]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채권발행 [법10]	-부동산투자회사 의 배당제한[법 28] 부동산투자회사 의 자금차입 또는 사채발행 제 한[법29]		-창투사의 정부, 금융등으로부터 의 자금차입[법9 ①] 창투사의 자본금 과 적립금 총액 의 10배 이내 사 채발행[법9②]	-전문회사의 자본 금과 적립금 합 계액의 10배 이 내 사채발행[법 19②]
이해관계 자와의 거 래 규제 (고유계정)	-최대주주 등과 의 거래 제한 [법54의3]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발 행유가증권 소유금지 ○ 최대주주, 주 요주주 및 임 원들에 대한 전대여 또는 신용공여 금지 ○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 ○ 최대주주등 발행유가증권 소유를 초과소 유 금지	-주요출자자 등 과의 거래제한 [영10의4] ○ 주요출자자 발행유가증권 또는 어음의 소유 또는 담 보취득 금지 ○ 주요출자자에 대한 금전대여 또는 신용공여 금지 ○ 기타 금감위 가 정하는 행 위	-주요출자자 또는 계열회사에 자금대여[영23 ②(1)]	-투자자문회 사의 이익보 전을 위하여 특수관계인 과 계약을 체결 하고 투자자 문의 대가 가 아닌 금전 수령금지[영 142①(2)] ○ 고객에게 현 금 또는 투자 자문재산 대 여등 금지[법 147①(2)]	-투자자문회사의 이익 보전을 위하여 특수관 계인과 계약을 체결하 고 투자자문의 대가가 아닌 금전 수령금지 [영142조 ①(2)] 고유재산 또는 이해관 계인이 보유하는 투자 자문재산과의 거래금 지[법147①(1)] 다른 고객의 일임자산 과의 거래금지[법147 ②(2)] 간접투자재산과의 거 래금지[법147②(3)] 고객 동의없이 이해관 계인 발행 유가증권 투자금지[법147② (4)]		-동일자주등에 대 한 신용공여 한 도[법15]	-부동산투자회사 의 그 임직원, 특 별관계자 및 주 요주주와의 거래 금지[법30]				-특수관계에 있는 구조조정대상기 업 인수 또는 자 산매입 금지[법 14의3③(1)] -인수한 구조조정 대상기업 또는 매입자산을 특수 관계인에 매각금 지[법14의3③ (2)] -자산총액의 20% 초과하는 금액의 특수관계에 있는 구조조정대상기 업에 투자 금지 [법14의3③(3)]
경영공시 등	-영업보고서[법 47] -경영공시[규정 2-70]	-사업보고서[법 47] -경영공시[규정 42]	-결산보고서 및 분기별 정기보 고서[법17①] -경영공시[법17 ③]	-영업보고서 [법148, 영 143]	-영업보고서[법148 , 영143]		-영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법 19] -경영상황 공시 [법25의3]	-경영상황 공시 [법24]	-투자보고서(결 산)[법37]-분기/ 결산		-결산보고 [법10] -경영공시 [법7의5]	-결산서류 비치공 시[법18의2]

(3) 영업행위 규제의 개편

- 동일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영업행위 규제(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된 규제 + 금융투자업별 규제)를 부과



- 고객에 따라 적용되는 공통 영업행위규제를 차등화

	일반투자자 (General Investor)	전문투자자 (Professional Investor)
신의성실 의무 (Duty of Good Faith)	적용 (Applicable)	적용 (Applicable)
손실보전 금지 (Prohibition of Loss Compensation)	적용 (Applicable)	적용 (Applicable)
Know-your-customer-Rule	적용 (Applicable)	적용 (Applicable)
원하지 않는 권유 금지 (Prohibition of Unwanted Solicitation)	적용 (Applicable)	적용 (Applicable)
적합성 원칙 (Suitability Principle)	적용 (Applicable)	×
설명 의무 (Duty of Explanation)	적용 (Applicable)	×

<참고4> 현행 금융법상 영업행위 규제(투자권유 관련)

	증권회사 (증권거래법)	선물회사 (선물거래법)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자산관리회사 (기업구조조정투 자회사법)	신탁회사 (신탁업법)	종합 금융회사 (종합법)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운용회사 (선박투자회사법)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 원법)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산업발전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영업행위 감독기관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건설교통부 (금감위조치요구권)	해양수산부 /금감위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금감위일부요구권)
성실의무등			법86,129:선관의무			법44:선관의무						
고객구분관리												
위험상품 규제	영84의28:장외 파생상품 거래 상대방 제한											
Know your customer rule												
적합성원칙					영139②: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법43①:가격변 동등에 따른 손 실위험 및 추가 부담 발생 가능 성에 관한 거래 위험 사전통지	법56:투자설명서 제공 및 주요내용 설명(판매 회사)	영139①:투자자 문 범위등 서면 자료 사전교부	영139①:투자일임 범위등 서면자료 사전교부				법10②, 영7 -투자설명서 제공 및 주요내용 설명 (투자회사 설립시 발기인) -주식청약서 제공 및 주요내용 설명 (투자회사 성립후)	법9①, 영5 -투자설명서 제공 (투자회사 설립 시 발기인) 법15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 교부		
위반시 손해 배상책임			법19:손해배상책임									
계약서 교부		법43②:선물거 래에 관한 계약 내용 서면 교부 규정 47:실명확 인후 서면에 의 한 계약 체결		영139③:서면에 의한 계약 체결	영139③:서면에 의한 계약 체결							
거래내역 통지	법46,영35의11: 매매거래등의 통지 규정 4-18:매매 거래내역 통지	영11의4:거래내 역 통지	법 121:자산운용보고서 제출(3월에 1회 이상)		법 146, 영138:투 자결과등 고객에 게 교부(분기 1회 이상)				법37, 영29:투자보 고서 비치,교부	법43:자산운용명 세 보고		법18:업무운용보 고서
부당권유 규제	법43:거래형태 의 사전명시의 무 법52,영36의3, 규칙13의2 -손실부담 또는 재 산상 이익제공 -단정적 판단제공 -Front Running -허위사실 유포 -과당거래 권유 -부당한 고객 차별 등	법45, 영12 -손실부담 또는 이익보장 -단정적 판단제 공	<자산운용회사>:법91 -손실부담 또는 이익보장 -간접투자재산으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 -수수료 목적 단기매매등 <판매회사>:법57 -원금보장 등 수익보장 -판매에 따른 대가수수 -판매관련 취득정보 이용 -허위표시등 -판매행위준칙 제정	법147조, 영142조 -손실부담 또는 이익보장 -고객으로부터 현금등 보관·예 탁 -고객에게 현금 등 대여, 제3자의 대여의 중개·주선·대리 -정당한 근거없는 조언 -허위사실 유포 -고객의 위법거래 은폐를 위한 부 정행위				<부동산투자회사> 법33,영25 -일정한 이익보장 또는 약속 -자산의 투자운용 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 익 도모	법33 -선박운용에 따른 수익의 담보제공 또는 대여·이전 -일정한 이익보장 또는 약속 -손실의 전부 또 는 일부 부담 또 는 약속		법 15의3② -구조조정조합 운 용시 이익보장 또는 손실보전 약속	
광고규제			법59:광고내용 등 규제									
약관규제			법29:신탁약관의 제정 및 보고 법30:표준신탁약관 법31,32:신탁약관 변경				법252:약관 등의 변경					

(4) 간접투자기구(Vehicle)에 대한 기능별 규율 (부처협의 필요)

- 개별 법률별로 간접투자기구가 산재함에 따른 투자자보호 공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간접투자기구에 대해 통합법을 적용함이 바람직
* 펀드운용을 위해서는 자산운용업 인가(진입 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적용

현 행									
법률	자산운용업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중기창업지원법	산업발전법	SOC 민간투자법	벤처육성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기구명칭	투자신탁/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창투조합	CRC조합	SOC 투융자회사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법적형태	신탁계약/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조합	조합	주식회사	조합	조합
설립규제	등록	등록	인가	인가	등록	등록	등록	등록	×
운용자	자산운용업자 한정	×	×	×	×	×	○	×	×
재산 분리보장	○	○	○	○	×	×	○	×	×
이해상충 방지등	○	○	△	△	△	△	○	×	×
외부 감사	○	×	×	×	×	×	○	×	×
운용 공시	○	△	△	△	△	△	○	×	×
감독 기관	금감위	금감위	건교부	해수부	중기청	산자부	금감위/ 예산처	중기청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규율을 받음

개 선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투자신탁	범용투자회사/ 단종투자회사	각종 조합
신탁계약	주식회사	조합
등록		
자산운용업자 한정		
○		
○		
○		
○		
금융감독위원회		

- 다만,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법률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참고5> 현행 금융법상 간접투자기구 규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 법	선박투자회사법	중소기업창업지원 법	산업발전법	SOC민간투자법	벤처특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Vehicle	명칭(종류)	투자신탁	투자회사	사모투자 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 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 정부동산투자 회사	선박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법적형식	[신탁계약]	[주식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간투법의 투자회사]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
	지배구조	주식지배 [법69]	주주총회 -이사회 -법인이사/ 감독이사 [법75,77]	사원총회 [무한/유한] -업무집행사원 [법144의10]	주주총회 -이사회 [법12,14]	주주총회 -이사회 [법12,13]	주주총회 -이사회 [법21]	-조합원[유한/무 한] -업무집행조합원 [창투자] [법11]	-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 업무감독조합원 [법15④]	-	-조합원[유한/무한] -업무집행조합원 [법4의3,13]	-
설립규제	규제방식	신탁약관 보고	등록	등록	등록	인가	인가	등록	등록	등록	등록	-
	감독기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 회]	[금융감독위원 회]	[금융감독위원 회]	[건교부장관] [금감위 통보]	[해양수산부장관] 금감위 통보	[중소기업청장]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예산처 협의	[중소기업청장]	-
자산운용	운용대상	일반자산 [법2]	일반자산 [법2]	다른 회사 주식 [법144의7]	위탁자산 주식 [법43]	부동산[법21] [취득,관리,개 발사업]	선박[법24] [취득,대선등]	창업자 [법12]	구조조정대상기업 [법15의2]	SOC법인 증권 [법4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법4의3]	-신기술사업자 [법41③]
	운용자	자산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법인이사]	업무집행사원 [무한책임사원]	자산관리회 사[법41]	자산관리회 사[법22의2]	선박운용회사[법 30]	창업투자[법12①]	CRC, 기금, 캠프 [법15④]	자산운용회사[법 인이사]	창업자, 신기술금 융업자, 유한회사[법 4의3], 누구나[법13]	신기술금융업자 [법44]
자산보관 · 관리		수탁회사에 위탁 [법23,28]	자산보관회사 에 위탁 [법24]	-	자산보관회 사에 위탁 [법50]	선박회사주 택공사,토지 공사,캠프 포 함[법35]	선박회사에 위탁 [법36]	-	자산보관회사에 위탁 [법41④]	-	-	-
일반사무관리		-	일반사무관리 회사에 위탁 [법25]	-	일반사무주 탁회사에 위 탁[법52]	사무수탁회 사에 위탁 [법22①]	-	-	-	-	-	-
투자자보호 또는 이익상충방지		선관주의의무[법 86] -수탁회사는 간접 투자자산을 고유 재산과 구분[법 130①]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법92]	선관주의의무 [법86] -자산보관회사는 간접투자자재 산을 고유재산 과 구분[법130 ①] -이해관계인 거 래제한[법92]	-	선관주의의 무[법44] -고유재산과 구분관리[법 47] -이해관계자 거래제한[법 21]	자산보관기 관은 투자회 사자산과 고 유재산 및 제 3자 위탁자 산과 구분[법 36③] -이해관계자 거래제한[법 30]	자산보관회사는 투자회사자산을 고유재산 및 제 3자 위탁자산과 구분[법37③] -이해관계자 거래 제한[법29]	선관주의의무[법 12②] -제3자를 위한 거 래금지[법12 ②]	선관주의의무[법 15의3①] -이해관계자 거래 제한[법15의3②]	자산운용업법 적용]	-	-
차입 및 사채발행		-	투자회사재산 총액의 10%이 내 예외적 차 입금차입 허용 [법89②③]	투자회사재산 의 10%이내 차입 및 채무 보증 허용[법 144의8]	자기자본의 2배 이내 차 입허용[법 20]	자기자본 2 배 이내 차입 및 사채발행 허용[법29]	자본금의 10배 이내 조건부 허 용[법25]	자금차입, 지급 보증, 담보제공 금지[법12④]	자금차입, 지급보 증, 담보제공 금지	자본금의 30%이 내 제한적 허용[법 41의5]	-	-
외부 감사		외부감사[법100]	외부감사[법 100]	-	감사[공인회 계사] 선임 [법17]	감사[공인회 계사] 선임 [법14의2]	-	-	-	-	-	-
공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 교부[법 121] -수시공시[법122]	자산운용보고 서 작성 · 교 부[법121] -수시공시[법 122]	-	자산운용보 고서[법24① ③] -결산서류 비 차공시[법27]	투자보고서 [법37] -결산서류 비 차공시[법 38]	자산운용명세 고[법43] -결산서류 비치 [법38,40,42]	창업투자회사 공 시[법7의5] -결산보고[법10] -조합결산서 공시 [법17]	명업보고서[분기 및 결산서[법18⑤]	명업보고서 [법41의6②]	-	-

(5) 실체가 있는 투자회사에 대한 기능별 규율 (부처협의 필요)

- 차입을 하거나 주주로부터 자금을 모아 직접 투자한 후 수익을 배분하는 회사의 경우 금융회사임에도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 규제가 미비

➡ 통합법상 금융투자회사 수준으로 업규제를 정비하여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현 행

명칭	신기술 사업금융업자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투자대상	신기술사업자	부동산	창업자·벤처기업	부실기업
진입규제 방식	등록	인가	등록	등록
진입규제	○	○	△	△
건전성 규제	○	×	△	×
영업행위 규제	×	△	×	△
감독기관	금감위	건교부 (금감위 요구권)	중기청	산자부 (금감위 요구권)



개 선

명칭	단종투자회사(가칭)			
투자대상	신기술 사업자	부동산	창업자· 벤처기업	부실 기업
진입규제 방식	등록			
진입규제	○			
건전성 규제	○			
영업행위 규제	○			
감독기관	금융감독위원회			

II. 주요내용 –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1. 현황

□ 증권과 파생상품이 법령에 열거

➡ 금융투자회사는 열거된 금융투자상품만 취급 가능하고,
열거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만 투자자보호 규제가 적용

유가증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수익증권, MBS, 익명조합등 출자지분, ELW, ELS등 21개
-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장외파생상품

- 형태 : 선도, 지수선도, 스왑, 옵션 등 4개
- 기초자산 :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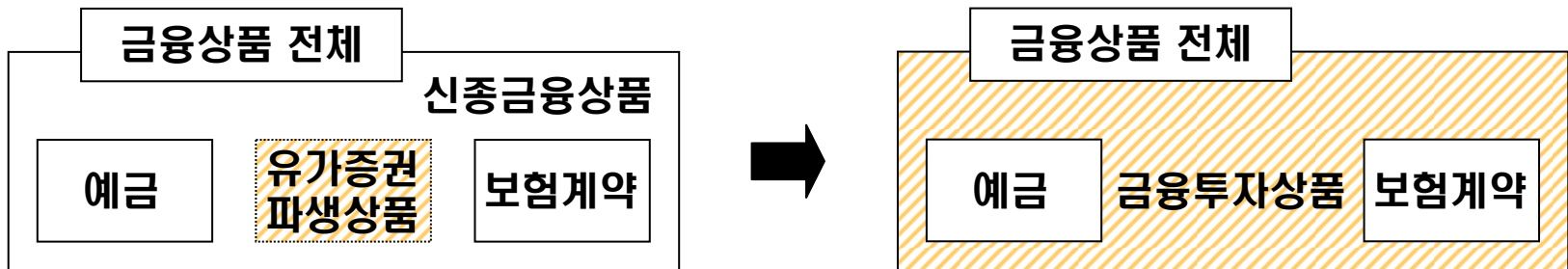
장내파생상품 [선물]

- 형태 : 선물, 옵션
- 기초자산 :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2. 개선방안

□ ‘투자성’을 가지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정의

➡ 금융투자회사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취급이 허용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보호 규제를 적용



□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안)

“이익의 획득이나 손실의 회피 또는 위험관리를 위하여
원본손실이나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 또는 추가지급의 가능성을 부담하면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등의 이전을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

- 목적 : 전통적 금융상품의 목적, 파생상품 또는 신종 금융상품의 목적
- 투자성(전통적 예금이나 보험계약과의 구분기준) : 증권지 특징, 파생상품의 특징
- 금전의 이전 : 증권지 특징, 파생상품의 특징
- 권리 : 계약상의 권리라는 특징

- 금융투자상품은 증권, 장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으로 구분되므로 각각의 개념도 추상적으로 정의

증권	명 칭		정 의	예
	전통적 증권	채무증권	채무를 나타내는 것	국채, 지방채, 사채, 기업어음 등
		지분증권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것	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출자지분 등
		수익증권	수익권을 나타내는 것	신탁 수익증권, 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증권예탁증권	지분증권의 예탁을 받은 자가 발행하는 증권	KDR, GDR, ADR 등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증권		이익을 기대하여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계약	간접투자증권, 비정형간접투자증권, 주식, 출자지분 등
	파생결합증권 (Securitized Derivatives)		기초자산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되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의 계약상의 권리	주가연계증권(ELS), ELW, 환율연계증권, 역변동금리채 등

장외파생상품 선도, 스왑, 옵션을 추상적으로 정의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 중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정의

-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도 최광의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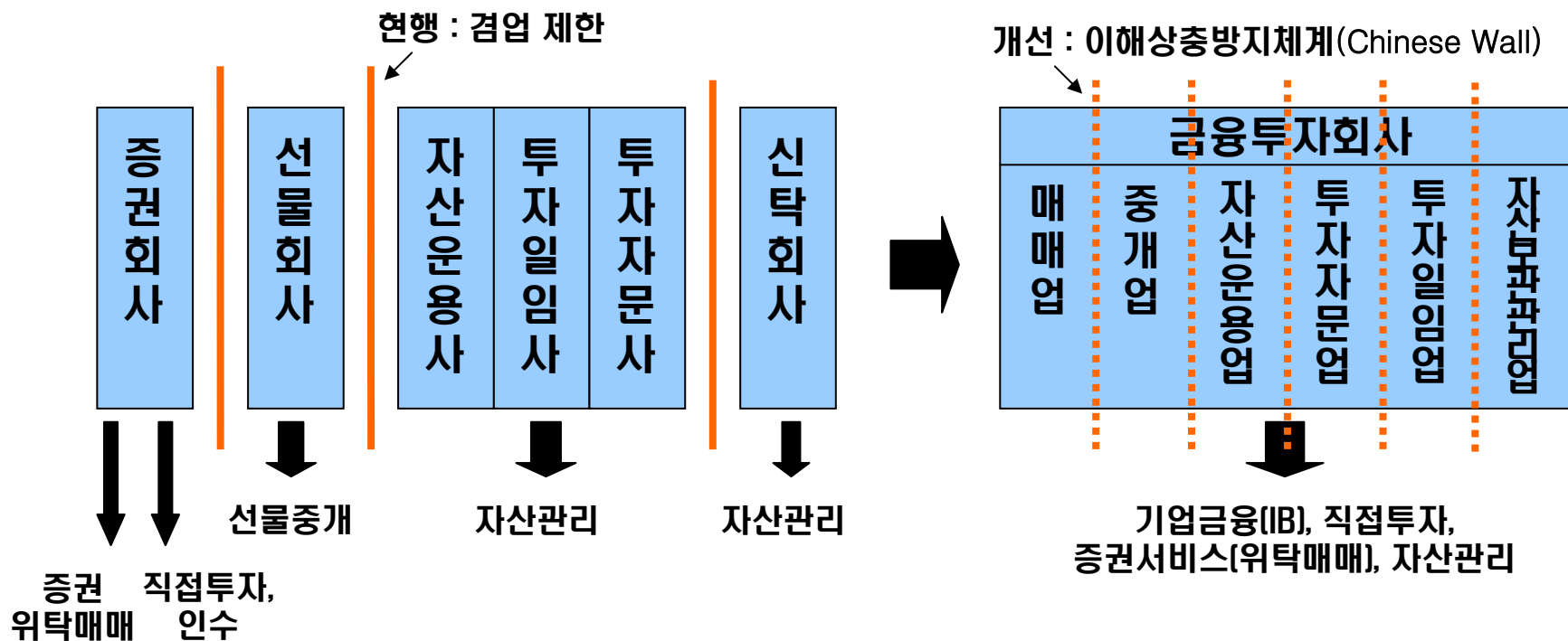
현 행	개 선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의 자연적·환경적·경제적 위험 등

1. 금융투자업간 겸영을 허용

- 그간 금융투자업을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세분화 하여 상호간 겸영을 제한

➡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매매업, 중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자산보관관리업)간에 겸영을 허용

-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마련



2.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 모든 부수업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체제로 전환

* 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에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

현 행	
방식	열거주의
허용된 업무	유가증권 평가업무, M&A중개·주선·대리업무, 기업경영·구조조정에 대한 상담업무, 증권보호예수업무 등 22개 업무 * 증권회사의 경우



개 선	
방식	포괄주의 체제
허용된 업무	[원칙] 모든 부수업무 허용 [예외 금지]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이나 투자자보호에 문제 가 있는 업무

3.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을 통한 판매망 확충

-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판매권유자(Introducing Broker) 제도를 도입

현 행	개 선
□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직접 금융기관 점포를 방문해야 하므로 투자자가 불편	□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사실상 중개하는 ‘판매권유자’제도 도입 ○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 금융투자회사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완전판매 방지
- 판매권유자의 기본적 자질과 소양을 담보하기 위해 증권관련 자격(예:증권투자상담사 등)을 요구하는 방안 검토
- 금융투자회사에게 금감위 등록·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불법행위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위탁한 금융투자회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병과

4. 자산운용업의 업무 확대

(1) 간접투자기구의 확대

- 간접투자기구를 확대하여 민법, 상법 등 현행법상 설립 가능한 모든 Vehicle을 활용하여 간접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선
-투자신탁, 주식회사, 합자회사(사모)	-투자신탁, 주식회사, 합자회사(사모) -유한회사, 합자회사(공모), 익명조합, 조합

(2) 간접투자 대상자산의 범위 확대

- 현재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간접투자 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대상자산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

현 행	개 선
증권, 선물, 부동산, 실물자산, 어음, 보험금지급청구권, 어업권, 광업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 [예:지적재산권 등]

(3) 투자대상 자산에 제한이 없는 펀드 허용

- 펀드의 운용자산에 제한이 없는 펀드를 허용하여 자산운용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

현 행

- 주요 투자대상인 자산을 기준으로 펀드의 종류를 구분
 - 증권펀드,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MMF, 재간접펀드, 특별자산펀드
- 각 펀드는 투자대상 자산이 제한

	증권펀드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MMF	재간접펀드	특별자산펀드
투자증권	○	○	○	○	○	○	○
파생상품	○	○	○	○	×	○	○
부동산	×	×	○	×	×	×	×
실물자산	×	×	×	○	×	×	×
특별자산	×	×	×	×	×	×	○



개 선

- 현행 7종류의 펀드를 주요 투자대상 자산을 기준으로 4종류로 재분류하되 다양한 투자 대상에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주요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운용 가능한 새로운 종류의 펀드(혼합자산펀드)를 신설

구분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MMF	혼합자산펀드
증 권	○	○	○	○	○
파생상품	○	○	○	×	○
부동산	○	○	○	×	○
실물자산	○	○	○	×	○
특별자산	○	○	○	×	○

5. 외국환 업무 범위의 확대

- 금융투자회사는 인가·등록 받은 금융투자업을 외화로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 고유재산의 운용에 있어서도 외국환거래법상 절차를 준수하는 한 모든 외국환 자본거래를 허용

현 행	개 선				
□ 열거주의 규율 체제 ○ 증권사 : 고객의 투자자금 환전, 외환증권 매매, 일부 외국환 파생거래 ○ 선물회사 : 고객의 투자자금 환전, 환위험 헷지를 위한 선물환거래 ○ 자산운용사 : 고객의 투자자금 환전, 외환 증권매매, 외화표시 간투증권의 발행·모집	□ 포괄주의 규율 체제 <table border="1" data-bbox="1100 819 1804 1182"> <tr> <td data-bbox="1100 819 1309 982">금융투자업 관련 외국환업무</td><td data-bbox="1309 819 1804 982"> ○ 고객에 대한 환전업무 ○ 인가·금융투자업은 외화로도 모두 취급 허용 </td></tr> <tr> <td data-bbox="1100 982 1309 1182">고유재산의 운용</td><td data-bbox="1309 982 1804 1182"> ○ 고유재산의 운용(투자, 헷지) 목적의 자본거래는 관련절차를 준수하는 한 모두 허용 </td></tr> </table>	금융투자업 관련 외국환업무	○ 고객에 대한 환전업무 ○ 인가·금융투자업은 외화로도 모두 취급 허용	고유재산의 운용	○ 고유재산의 운용(투자, 헷지) 목적의 자본거래는 관련절차를 준수하는 한 모두 허용
금융투자업 관련 외국환업무	○ 고객에 대한 환전업무 ○ 인가·금융투자업은 외화로도 모두 취급 허용				
고유재산의 운용	○ 고유재산의 운용(투자, 헷지) 목적의 자본거래는 관련절차를 준수하는 한 모두 허용				

※ 통합법 제정과 함께 외국환 거래규정에 반영

6.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 금융투자회사의 계좌를 통해 결제, 송금, 수시입출금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 금융투자회사가 대표 금융기관-대행은행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소액 결제 시스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현 행	개 선
타은행창구에서 증권계좌로 무통장입금	은행영업시간내에만 가능, 별도수수료	은행 공동망을 통해 은행과 동일한 부가서비스 제공
타은행 ATM/CD에서 증권계좌로의 입금	불 가	"
타은행 ATM/CD에서 출금	은행영업시간내에만 가능	"
타은행으로의 자금이체	은행영업시간내에만 가능, 별도수수료	"
카드대금, 지로납부 등 결제	불 가	"

➡ 선진 투자은행처럼 입·출·송금이 자유로운 다양한 신상품 개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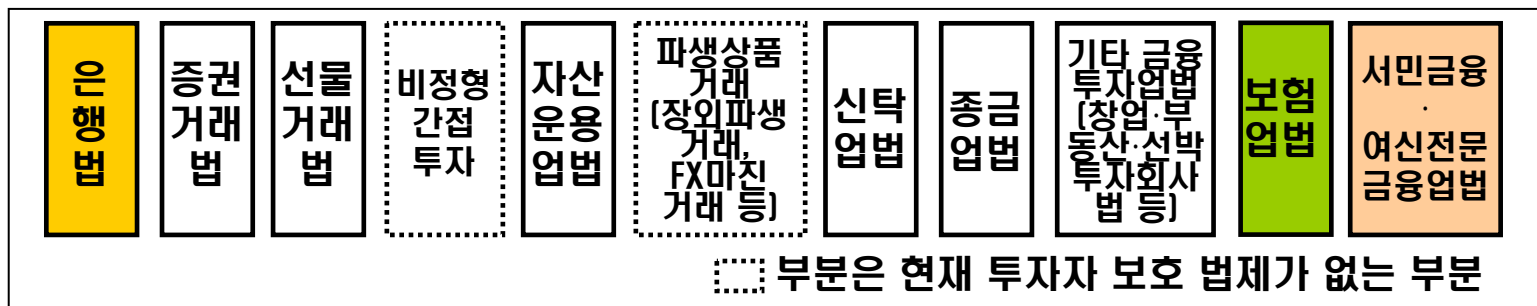
II. 주요내용 –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1.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부분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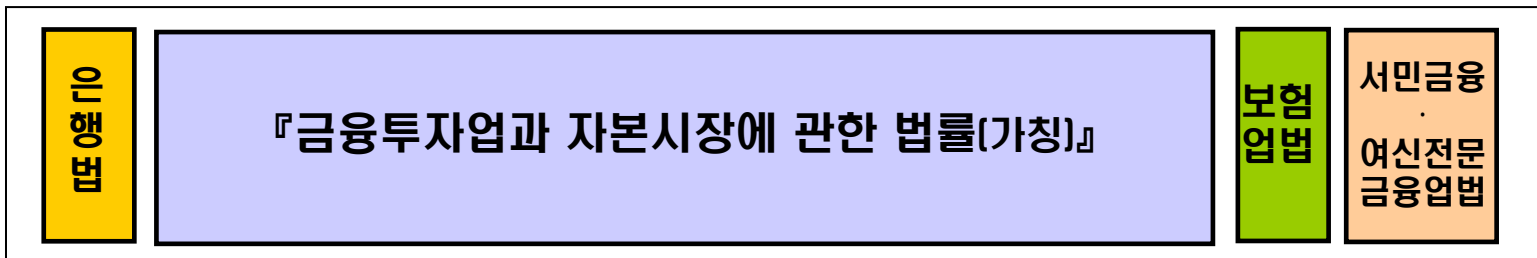
- 그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가 없었던 영역(파생상품거래 등)에 앞으로는 통합법에 의거한 제반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

➡ 투자자 보호의 공백이 제거

< 현행 금융업 법체계 >



< 통합 후 금융법 체계 >



2. 「투자권유 규제」의 도입 – 선진국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 제도화

(1) 설명의무(Product Guidance)의 전면 도입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할 경우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함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에 대해 금융투자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특칙을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
 - 투자자가 투자원본을 손해 본 경우, 원본 결손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

현 행	
적용대상상품	일부상품(간접투자증권, 선물)
설명방법	투자설명서 제공 또는 설명
손해배상 특칙	간접투자증권에만 존재
손해배상액 추정	×



개 선	
적용대상상품	모든 금융투자상품 (투자성 있는 금융상품)
설명방법	설명한 후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함
손해배상 특칙	모든 금융투자상품 적용
손해배상액 추정	모든 금융투자상품 적용

[2] Know-your-customer-rule의 도입

-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하도록 함

[3] 적합성(Suitability) 원칙의 도입 : 일반투자자 대상

-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을 도입
 - ※ 적합성 원칙은 위험감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

[4]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Unsolicited Call)에 대한 규제 신설

- 투자자의 원하지 않은 전화 등을 통한 ‘투자권유’는 투자자의 사생활과 평온한 삶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를 통한 투자권유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만 허용

3. 투자광고 규제 도입

- TV, 홈쇼핑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광고 규제를 도입
 - 투자광고의 정의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영위 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투자광고에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의무화
 - 투자광고는 금융투자회사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법하게 국내에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을 받지 않은 자가 금융투자업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

4. 이해상충 방지 체제의 설치

□ 이해상충의 발생 양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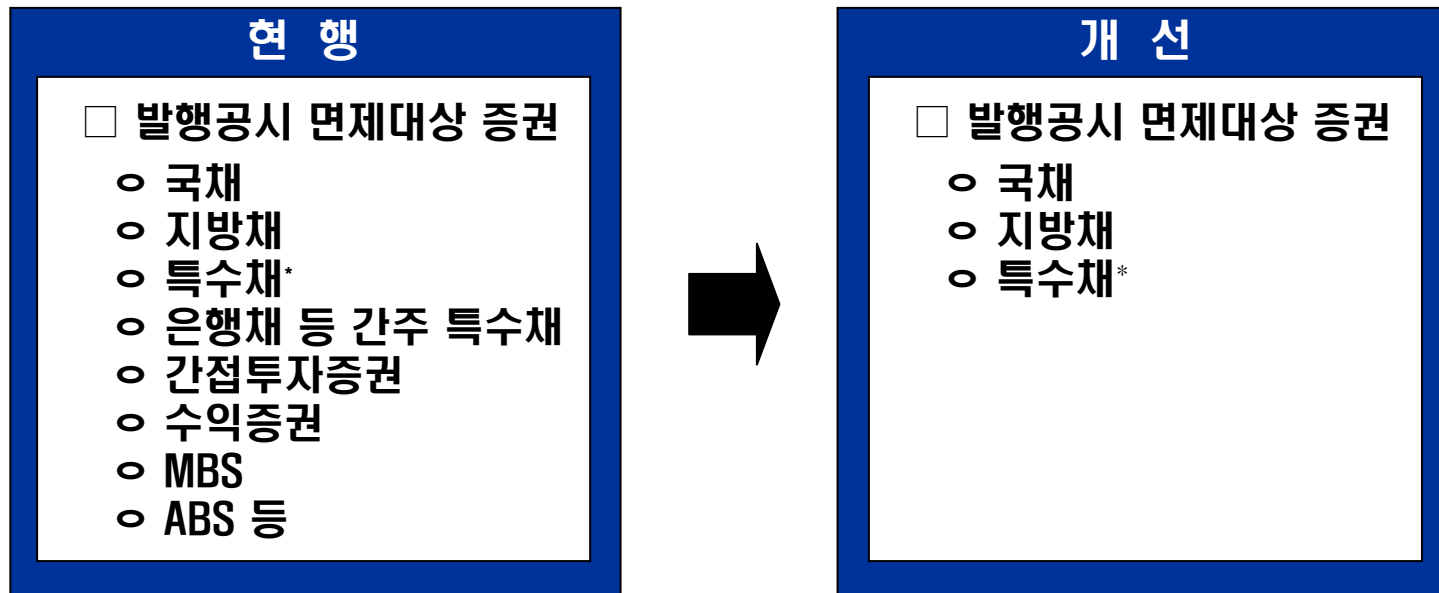
- 이해상충은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희생하여 금융투자회사 또는 타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단일의 금융투자업 영위 시에도 발생하지만, 앞으로 복수의 금융투자업간 겸영이 허용되면 발생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음

□ 이해상충 방지 체제의 마련

- ① 이해상충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형벌로 제재
- ② 상시적으로 이해상충 내용을 파악·관리하는 ‘내부관리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 ③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이해상충을 해소한 후에 당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
- ④ 이해상충이 큰 경우에는 조직분리, 임직원 겸직제한 등을 의무화

5. 발행공시 규제의 적용범위 확대

- 발행공시 규제(유가증권신고서 공시)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유가증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발행공시 의무의 적용제외 증권은 발행주체가 국가에 준하는 채권으로 한정



* 특수채는 현행과 같이 법률이 직접 설립한 법인만 인정 (예; 산업은행법에 의한 산업은행 등)

- 발행공시 확대에 따라 발행 분담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 분담료율(현행 : 주권 1.8bp, 사채권 5~9bp)을 낮추는 방안 검토

1. 기타 제도개선사항

(1) 증권거래법 등 개별법상 규제 완화

- ☐ 증권회사의 일임매매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투자일임업 등록을 한 경우 자유롭게 일임거래를 수탁가능토록 함
- ☐ 현재 신탁회사와 선물회사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책임준비금 적립의무는 앞으로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최저 자기자본 규제가 적용되므로 폐지
-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시 손해배상책임을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시로 명확히 하는 등 손해배상책임제도를 합리화
- ☐ 상장법인의 경영상황 및 장래계획에 대해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하는 수시공시업무를 거래소로 일원화 함

(2) 공시 규제와 불공정 거래 규제 개선

- ☐ 수시공시의 경우에도 발행공시·정기공시와 동일하게 기업의 경영상 비밀과 투자자 보호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공시의무를 유보함
- ☐ 5% Rule(주식등 대량보유보고 제도) 보고 의무 면제기관(현재 국가, 지자체, 정부기금 등)을 폐지하는 등 5% Rule 개선
- ☐ 내부자거래 금지대상을 기업의 내부정보를 통해 불공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하는 등 내부자거래금지제도를 강화
- ☐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이 통합됨에 따라 현선연계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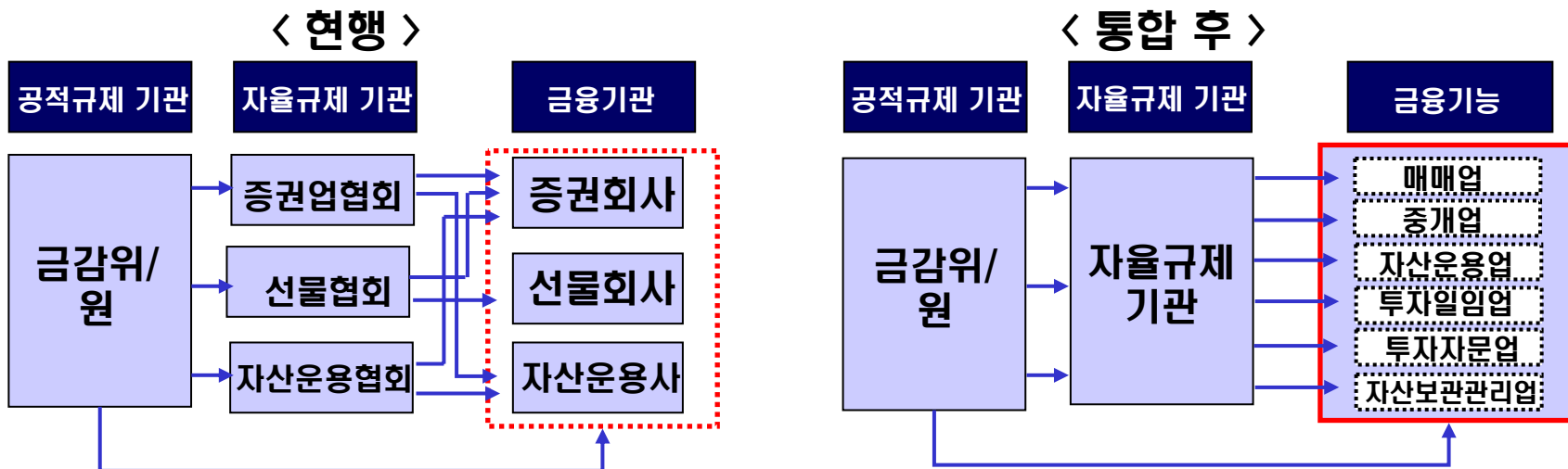
2. 자율규제 체제 개편

□ 통합법 제정과 함께 금융기관(증권·자산운용·선물 등)별 자율규제체제*를 재검토할 필요

* 회원간 영업질서 유지, 영업관련 분쟁조정, 전문인력제도 운용관리 등

- 금융투자업간 겸영이 허용되어 복수의 자율규제 기관의 필요성이 감소
- 공적 규제의 기능별 체제 도입에 따라 자율규제도 기능별로 수행할 필요

➔ 통합법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고 회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율적인 자율규제체제 개편방안을 마련



3. 통합법의 시행시기

- 감독당국과 시장참여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법 공포후 시행시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
 - 감독당국의 경우 현행 기관별 감독기준 등을 기능별로 개편할 필요
 - 시장참가자의 경우 새로운 기능별 인가·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자본의 조정, 물적·인적 설비의 개편 등 필요

4. 기존 금융투자회사의 일괄 재인가·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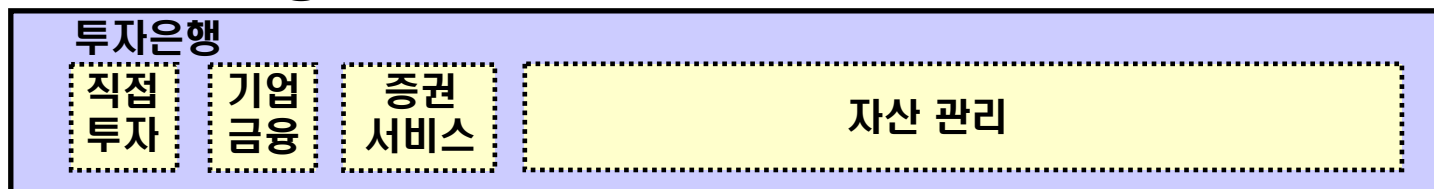
- 기존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통합법을 무리없이 적용하기 위해 통합법에 의한 일괄 재인가·등록이 필요
- 이를 위해 법 시행전 상당기간을 기존 금융투자회사의 일괄 재인가·등록 기간으로 규정하여 운용
 - 동 기간중 새로운 인가·등록 요건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 등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함

검업화와 대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선진 투자은행 (Investment Bank)의 출현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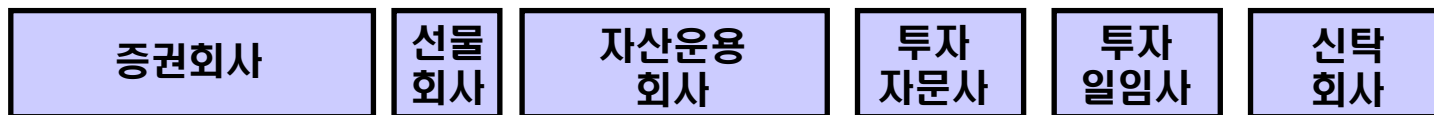
(1) 선진투자은행과 동등한 영업모델 확보

- 업무영역 측면 : 선진 투자은행(IB)과 동일한 업무영역 구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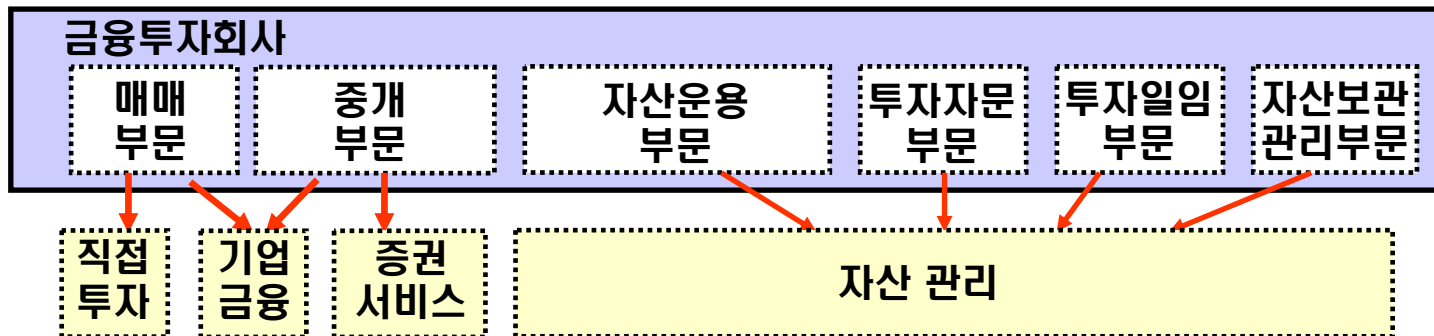
< 선진 투자은행 >



< 현행 >



< 통합 후 >



□ 금융투자상품 측면

증권	모든 파생적 기법을 활용한 '증권'의 설계가능: 파생결합증권	예) 역변동금리증권, 이중지표증권(CMT 증권 등), Range accrual 증권, CPPI based 증권, 디지털 옵션결합증권 신용연계증권(Credit linked Note) 펀드연계증권(Fund linked Note) 재해연계채권(CAT Bond) 등
	다양한 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한 간접투자 설계가능	예) 상법상 합자회사를 활용한 공모 간접투자증권, 익명조합형태의 펀드 등
	투자재산에 제약이 없는 펀드 설정가능	예) 투자대상을 주식, 채권, 부동산, 실물, 파생상품, 통화 등으로 자유롭게 바꾸는 펀드
장외파생상품	평가 가능한 모든 위험을 대상으로 모든 파생상품의 설계가능	예) 재난, 재해, 범죄발생율, 날씨(강수량, 강설량, 일조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설계 가능한 모든 파생상품의 장내거래 가능	예) 탄소배출권 등 환경관련 선물, 옵션 전력 등 에너지 관련 선물, 옵션 등

➡ 선진 투자은행과 동등한 영업모델 선택 가능

〈 통합법 제정 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모델 변화 〉

	직접투자		기업금융		증권서비스	자산관리			
	매매	투자	인수	자문	중개	자문	일임	자산운용	신탁
전통적 증권			종금사			자산운용사			신탁 회사
전통적 파생상품			증권회사		선물회사(선물)				
신종증권									
신종 파생상품									



	직접투자		기업금융		증권서비스	자산관리			
	매매	투자	인수	자문	중개	자문	일임	자산운용	신탁
전통적 증권	금융투자회사								
전통적 파생상품									
신종증권									
신종 파생상품									

(2) 경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 투자은행 업무를 한 회사가 수행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① 증권업 + 선물업의 시너지 효과

➡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매매·중개가 가능하므로
종합적인 고객서비스가 가능

② 기업금융 + 자산관리 + 직접투자의 시너지 효과

➡ M&A주선 등 기업금융 업무시 자산관리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나
금융상품판매 등을 통해 조달한 고유자산을 직접 투자할 수 있어
Deal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음

③ 다양한 자산관리업 경영의 시너지 효과

➡ 파생결합증권 등 구조화 증권, 각종 간접투자상품, 일임형 랩,
특정금전신탁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직접 설계하여 제공하는
종합 자산관리서비스 가능

(3)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 설계·제공으로 경쟁력 강화

- 기업금융, 직접투자, 자산관리 등 업무 시 필요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운용이 가능해지므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짐

① 기업금융(IB) 업무 시

➡ 전통적 주식·채권 외에도 신종 증권·의 설계 지원 및 인수가 가능해 지므로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능력이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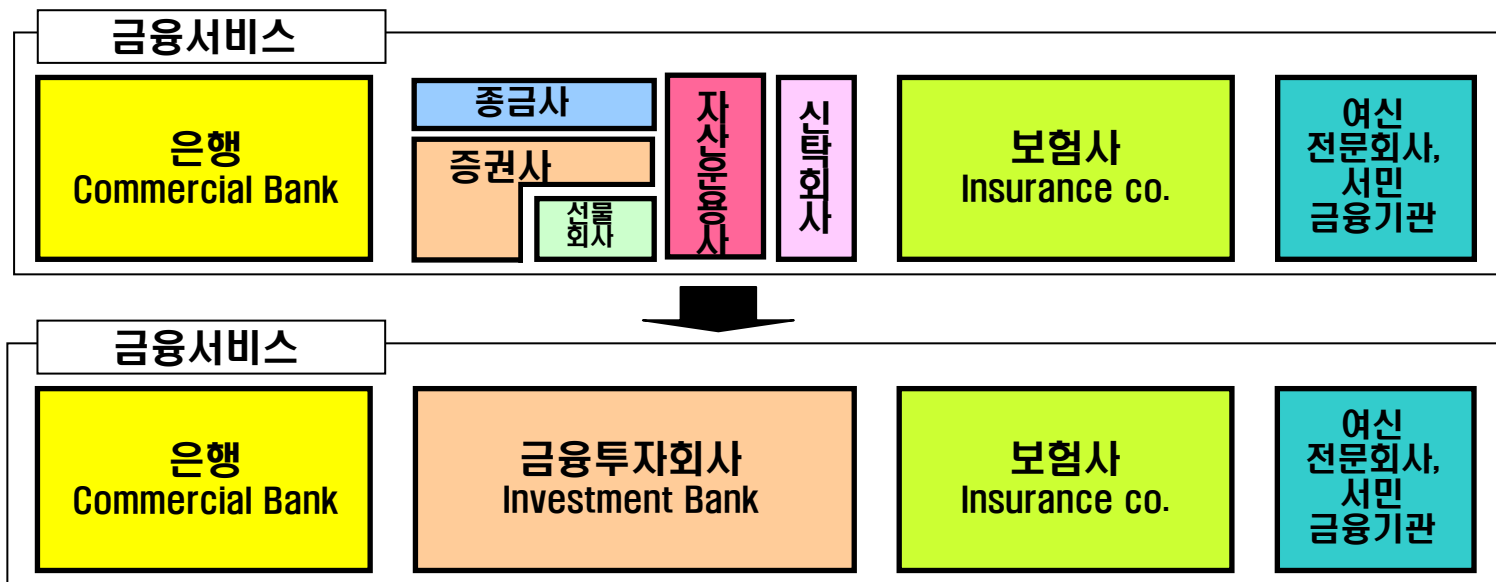
② 자산관리 업무 시

➡ 투자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파생결합증권, 간접투자상품, 파생상품의 설계·제공이 가능

(4) 대형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

- 은행·보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형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

< 통합법 제정에 따른 금융업의 체제 변화 >



- 투자은행 업무에 필수적인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고유재산 확보가 가능
- 자산관리, 증권서비스 등 각 업무영역의 고객정보를 공유하여 영업기회 확대
- 운용자산 규모 확대에 따라 자산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후선 관리부서와 전산설비 등 공유를 통한 운용 효율성 제고

(5) 통합법 제정에 따른 규제 혁신

- 현재 300여개에 달하는 자본시장 관련 규제 중 40%정도를 폐지 또는 완화



- 폐지되는 주요 규제

- 증권업 · 선물업 · 자산운용업 간 겸영의 금지
- 취급대상 금융상품의 제한
- 간접투자기구 형태 및 간접투자증권 종류의 제한
- 자산운용 · 신탁 · 종금사 고유재산의 자산운용 제한
-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의무화 등



〈참고6〉 통합법의 구성 : 총 10편 약 450개 조문으로 구성

편	장	내용
제1편 총칙	-	목적, 정의(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진입규제
	제2장	지배구조
	제3장	직무종사자
	제4장	경영건전성 규제
	제5장	영업행위 규제
제3편 증권발행과 유통	제1~2장	총칙, 발행공시 규제
	제3장	M&A 관련 규제
	제4장	유통공시 규제
	제5~6장	상장법인의 특례, 장외거래 등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2장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금지
	제3~4장	포괄적 사기금지, 공매도 금지, 신고 등
제5편 간접투자기구	제1~9장	정의, 구성, 간접투자증권, 기관 등
제6편 증권선물거래소	제1~6장	증권선물거래소 조직, 시장개설, 시장감시 등
제7편 관계기관	제1~5장	협회, 증권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제8편 감독 및 제재	제1~4장	금감위의 명령, 검사 및 조사, 제재·과징금 등
제9편 보칙	-	자금중개회사, 종금사 등
제10편 벌칙	-	형벌, 과태료 등



〈 감사합니다 〉